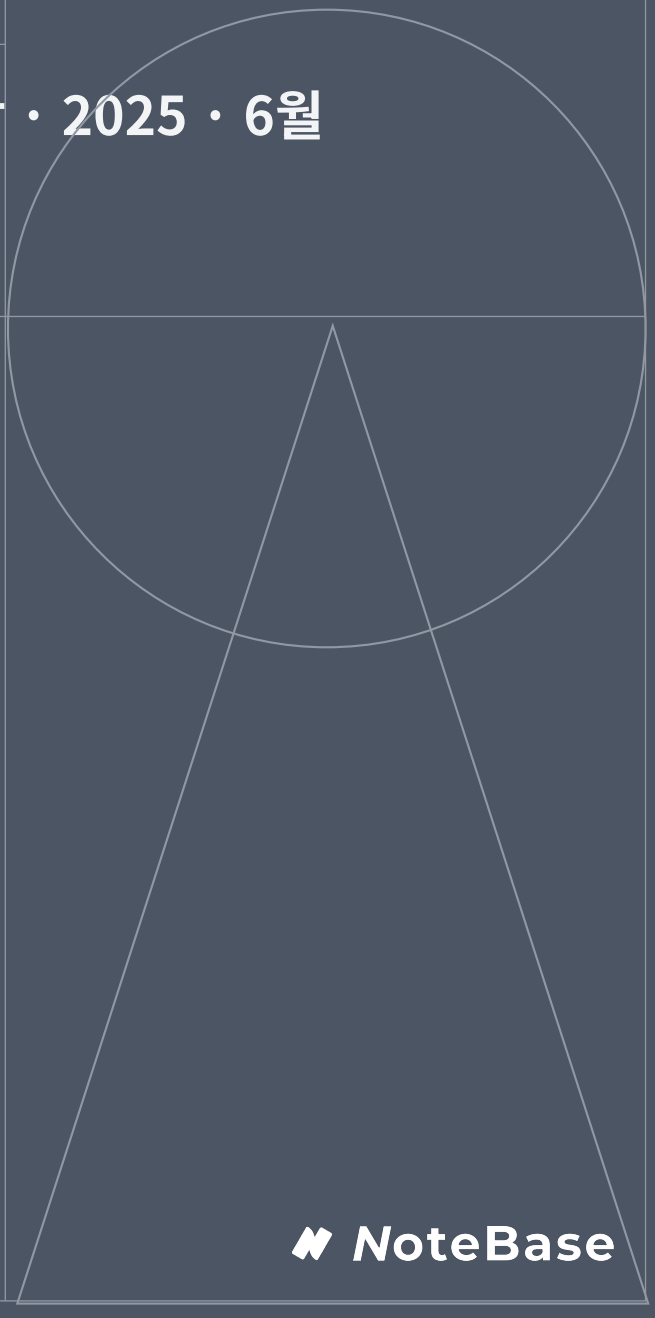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학 · 2025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학 · 2025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조경학 · 2025 · 6월

문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허가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시 가능한 최대 용적률[%]은?

① 50

② 100

③ 150

④ 200

정답 2번

공통 해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은 100% 이내**로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
나.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NoteBase

문 2. 복원하고자 하는 목표군락과 동일한 군락을 찾아 식생구조를 조사하여 동일한 수종과 크기로 배식을 하는 식재 기법은?

① 모델 식재

② 보통 이식

③ 군락 이식

④ 보통 식재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목표군락의 식생구조를 본보기로 삼아 **수종·크기·배치를 재현**하는 기법이 모델 식재이다. 기존 군락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맞추어 식물을 배치해 심는다.

개념 구분

모델 식재: 복원하려는 목표군락과 같은 군락을 선정하고, 그 군락을 이루는 수종과 수목의 크기·배치 등 식생구조를 조사한다. 이 조사 결과를 식재의 모델로 삼아 대상지에 **동일한 수종과 크기의 수목을 모델군락의 배치에 맞추어 심는다**. 문제의 '식생구조를 조사하여 동일한 수종과 크기로 배식'한다는 조건이 이에 해당한다.

군락 이식과의 구분: 군락 이식은 **기존 식물군락과 생육기반인 토양층을 함께 옮기는** 방법이다. 모델 식재의 핵심은 본보기 군락의 구조를 조사하여 재현하는 데 있고, 군락 이식의 핵심은 기존 군락을 옮기는 데 있다.

NoteBase

문 3. 『디자인 위드 네이처(Design with Nature)』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생태적 계획과 설계의 방법론을 구축한 조경가는?

① 다니엘 카일리(Daniel U. Kiley)

② 이안 맥하그(Ian McHarg)

③ 피터 워커(Peter Walker)

④ 로런스 할프린(Lawrence Halprin)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이안 맥하그는 『디자인 위드 네이처』에서 **자연환경의 특성과 생태적 과정을 토지이용의 판단 근거로 삼는** 계획·설계 방법을 제시했다.

핵심 풀이

『디자인 위드 네이처(Design with Nature)』의 저자는 이안 맥하그(Ian McHarg)이다. 맥하그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과정을 분석하여 어느 곳을 개발하고 보전할지 결정하는 **생태적 계획**을 체계화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여러 환경정보를 지도에 나타내어 겹쳐 보는 **중첩법**이다. 지형·토양·물·식생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특정 토지이용에 적합한 장소와 제약이 큰 장소를 판단한다. 자연의 모습을 겉으로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환경에 대한 분석을 계획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로런스 할프린은 사람의 움직임과 공간 경험, 이용자의 참여를 중시한 설계 과정과 관련된다. 이 문항에서 제시한 **『디자인 위드 네이처』와 생태적 계획 방법론**의 연결은 맥하그를 가리킨다.

NoteBase

문 4. <보기>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 국가정원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녹지 면적에 대한 기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 _____㉠_____ 퍼센트 이상일 것

① 40
② 50
③ 60
④ 70

정답 1번

공통 해설

국가정원은 원형보전지와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 정원 총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가목2)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B4OgnbEe1e2JFkvqEXWLqAUpvTJ4QKyR.webp

NoteBase

문 5. 경관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관요소는 관찰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② 지표상태와 연관된 질감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③ 비스타는 좌우로의 시선이 제한되고 일정 지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된 경관이다.

④ 정자목, 가로수는 점적요소에 속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정자목은 한 지점에서 초점을 이루는 **점적요소**이지만, 가로수는 도로를 따라 줄지어 이어지는 **선적요소**이다. 개별 나무의 형태뿐 아니라 경관 전체에서의 배치와 연결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같은 대상도 관찰자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보이는 크기, 형태, 다른 대상과의 겹침이 달라진다. 따라서 경관요소를 지각하는 방식은 **관찰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② O: 질감은 지표나 물체의 표면이 시각적으로 거칠거나 섬세하게 느껴지는 성질이다. 계절에 따라 잎이 나고 떨어지거나 지표의 식생 상태가 달라지면 표면의 무늬와 명암도 변하므로, **질감도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③ O: 비스타는 수목이나 건물 등이 양옆의 시야를 한정하고, 길게 열린 방향의 특정 지점이나 대상으로 **시선을 모으는 경관**이다. 양쪽에 늘어선 수목 사이로 시선이 길 끝의 조형물에 모이도록 구성한 경관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X: 정자목은 한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눈에 띄어 초점을 형성하므로 점적요소에 해당한다. 반면 가로수는 도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방향과 흐름을 만드는 **선적요소**이다. 따라서 '정자목, 가로수는 점적요소'는 '정자목은 점적요소, 가로수는 선적요소'로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공원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고시일부터 2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이하 이 조에서 "도시공원 결정"이라 한다)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20.2.4>

②

사업 미시행에 따른 실효의 기본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이다.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국유지·공유지는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30년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25년이라는 기간은 잘못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2.4>

NoteBase

③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국유지·공유지 중 30년 미시행에 따른 실효가 예상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②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고시일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에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공고한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④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규정은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④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0.2.4>

NoteBase

문 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생태통로 설치 대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백두대간보호지역
ㄴ.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ㄹ. 자연공원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ㄱ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3.9.23, 2025.10.1>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ㄴ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3.9.23, 2025.10.1>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 · 도생태 · 경관보전지역

NoteBase

ㄷ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3.9.23, 2025.10.1>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ㄹ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2.7.27, 2013.9.23, 2025.10.1>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NoteBase

문 8. 자연공원법령상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④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보전·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는 **동·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의2(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7.5.29, 2024.5.7>
2.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동 · 식물, 경관, 국가유산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는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의2(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7.5.29, 2024.5.7>
2.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나. 토지매수, 훼손지복원, 오염예방 등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NoteBase

③

천재·지변 등으로 자연환경보전 여건이 변화한 경우는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3조의2(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법 제1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1. 천재 · 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보전 여건의 변화가 있는 경우

④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변경 주기와 다르다.

자연공원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 · 관리계획의 수립 등)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NoteBase

문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의 종류와 그 설치 규모의 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체육공원 - 1만제곱미터 이상
② 문화공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③ 역사공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④ 수변공원 - 10만제곱미터 이상

정답 1번

①

체육공원의 설치 규모 기준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마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hOlWiXMXp4rJmE3Ah7KaT9emp2vqE5-.webp

②

문화공원은 **설치 규모에 제한이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NTyM_Y-3fNHr35MfvO0gGj26Oe4LulMH.webp

③

역사공원은 **설치 규모에 제한이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4o8nkyZs9sDwVmLv_X5r1vgHVQMss5rI.webp

NoteBase

④

수변공원은 **설치 규모에 제한이 없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cVZJJBEL6MmlS5vKhNpQpRYgpuc1q54.webp

NoteBase

문 10. 「조경설계기준」상 미끄럼틀의 설계·설치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끄럼판의 기울기는 30⌧35°(평균 40° 미만)로 재질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미끄럼판의 높이가 1.2m 이상이면 미끄럼판 양옆으로 높이 15cm 이상의 날개벽을 전구간에 걸쳐 연속으로 설치한다.

③ 미끄럼틀은 남향 또는 서향으로 배치한다.

④ 1인용 미끄럼판의 폭은 40⌧50cm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

①

미끄럼판은 재질을 고려하여 **기울기 30⌧35°(평균 40° 미만)**로 설계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놀이시설(KDS 34 50 25:2024) 4.1.2 (2) ① 나.
4. 설계

4.1 단위놀이시설

4.1.2 미끄럼틀

(2) 형태 및 규격

① 미끄럼판

나. 미끄럼판의 기울기는 30⌧35°(평균40° 미만)로 재질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NoteBase

②

미끄럼판의 **높이가 1.2m 이상이면 양옆에 높이 15cm 이상의 날개벽을 전 구간에 연속으로 설치**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놀이시설(KDS 34 50 25:2024) 4.1.2 (2) ③
4. 설계

4.1 단위놀이시설

4.1.2 미끄럼틀

(2) 형태 및 규격

③ 미끄럼판의 높이가 1.2 m 이상이면 미끄럼판의 양옆으로 높이 15 cm 이상의 날개벽을 전구간에 걸쳐 연속으로 설치한다.

③

미끄럼틀의 배치 방향은 남향·서향이 아니라 **북향 또는 동향**이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놀이시설(KDS 34 50 25:2024) 4.1.2 (2) ① 가.
4. 설계

4.1 단위놀이시설

4.1.2 미끄럼틀

(2) 형태 및 규격

① 미끄럼판

가. 미끄럼틀을 북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한다.

NoteBase

④

1인용 미끄럼판의 폭은 40×50cm를 기준으로 한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놀이시설(KDS 34 50 25:2024) 4.1.2 (2) ① 다.
4. 설계

4.1 단위놀이시설

4.1.2 미끄럼틀

(2) 형태 및 규격

① 미끄럼판

다. 1인용 미끄럼판의 폭은 40×50 cm를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문 11. 수목의 성상과 관련하여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식물의 줄기가 길게 뻗어 나가면서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 식물 중 목본에 해당하는 것

① 교목
② 초본
③ 관목
④ 만경목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른 물체를 감거나 땅바닥으로 길게 뻗는 덩굴식물 가운데 **줄기가 목질화되는 것**을 만경목이라 한다.

개념 구분

만경목: 줄기가 목질화되는 덩굴성 수목이다. 보기의 '다른 물건을 감기도 하고 땅바닥에 퍼지기도 하는'은 **덩굴성 생장**을, '목본'은 나무질의 줄기를 갖는다는 뜻이므로 만경목에 해당한다.

초본과의 구분: 덩굴처럼 자라는 식물이 모두 만경목인 것은 아니다. 초본은 줄기가 목질화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약한 풀이다. 보기에는 **목본에 해당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덩굴성 초본과 구분된다.

교목·관목과의 구분: 교목은 뚜렷한 주된 줄기가 발달하고, 관목은 대체로 지면 가까이에서 여러 줄기로 갈라지는 형태이다. 이 보기에서는 주된 줄기나 가지가 갈라지는 위치보다 **줄기가 길게 뻗어 감거나 퍼지는 성질**이 만경목을 가리키는 단서이다.

NoteBase

문 12. 서울·경기 지방의 별서정원은?

① 초간정

② 서석지

③ 성락원

④ 명옥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성락원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별서정원이다. 따라서 서울·경기 지방의 별서정원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초간정은 **경상북도 예천**에 있다. 서울·경기 지방이 아니라 영남 지방의 별서정원이다.

② X: 서석지는 **경상북도 영양**에 있다. 서울·경기 지방이 아니라 영남 지방의 별서정원이다.

③ O: 성락원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어 서울·경기 지방이라는 지역 조건에 부합한다. 현재 국가유산 명칭은 '서울 성북동 별서'이다.

④ X: 명옥헌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다. 서울·경기 지방이 아니라 호남 지방의 별서정원이다.

NoteBase

문 13. 상록활엽교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은행나무

② 녹나무

③ 비자나무

④ 쉬땅나무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녹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활엽교목**이다. 넓은 잎을 가지며, 뚜렷한 원줄기가 높이 자라는 나무이다.

선지별 해설

상록·낙엽은 계절에 따른 잎의 유지 여부를, 활엽·침엽은 잎의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교목은 뚜렷한 원줄기가 높이 자라는 나무이고, 관목은 밑부분에서 여러 줄기가 갈라져 자라는 나무이다. 상록활엽교목은 이 세 기준을 함께 적용한 분류이다.

① X: 은행나무는 가을에 잎이 노랗게 물든 뒤 떨어지는 **낙엽교목**이다. 부채꼴의 잎을 가지지만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수는 아니다.

② O: 녹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넓은 잎을 가지고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며, 뚜렷한 원줄기가 높이 자라므로 상록·활엽·교목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③ X: 비자나무는 **상록침엽교목**이다.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교목이지만, 잎이 가늘고 길며 끝이 뾰족한 침엽수이므로 활엽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X: 쉬땅나무는 **낙엽활엽관목**이다. 넓은 잎을 가지지만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밑부분에서 여러 줄기가 모여 자라는 관목이므로 상록성과 교목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이도(里道)

② 자전거전용도로

③ 고속국도

④ 보행자전용도로

정답 3번

①

농어촌도로 중 **면도와 이도는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 ·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②

자전거전용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와 함께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 ·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③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가 포함되지만, **고속국도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 ·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NoteBase

④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와 함께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에 포함된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 · 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NoteBase

문 15. 「조경설계기준」상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① 3▨4월
② 4▨6월
③ 9▨10월
④ 10▨11월

정답 2번

공통 해설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4▨6월**이다.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중 잔디 및 초화류식재(KDS 34 40 25:2024) 4.2.2 (1) ①
4. 설계

4.2 잔디

4.2.2 잔디뗏장

(1) 잔디뗏장의 식재시기

① 한국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4▨6월, 한지형잔디의 뗏장 식재적기는 9▨10월과 3▨4월로 한다.

NoteBase

문 1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상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② 미국가재(Procambarus clarkii)
③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
④ 수영(Rumex acetosa)

정답 4번

①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는 **양서류 · 파충류의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양서류 · 파충류 다목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1eZSN692IrZbT7iXO-_Htu0Dhr8cKh4.webp

②

미국가재(Procambarus clarkii)는 **갑각류의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갑각류 가목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SQ69PyEQKS8YnPZ9pO_Lac8fiws1U4JW.webp

NoteBase

③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는 **곤충류의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곤충류 사목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 · 파충류, 어류, 갑각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ATASGmi-Phxjf2XEps8d5wIaFLMw-Qd4.webp

④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은 **애기수영(Rumex acetosella)**이며, **수영(Rumex acetosa)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별표 제2호 식물
1. 공통 적용기준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본 목록상의 약어 "spp."는 상위 분류군에 속하는 모든 종을 의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2. 생태계교란 생물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XPVSMsRP0hcIZPJcPseEKPm8V7Y20i_.webp

NoteBase

문 17. 「조경설계기준」상 하천조경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조경에서 심고자 하는 식물은 각각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식재방법, 식재장소 및 식재시기를 선택한다.

② 하천수목을 심을 때는 관목을 먼저 선택하며, 활엽수보다는 침엽수를 심는다.

③ 어린 수목을 심을 경우에는 시공 초기의 지표면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키가 작은 다년생 초본류를 함께 심는다.

④ 교목을 심을 때에는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계산을 수행한다.

정답 2번

①

식물마다 **침수·습윤 환경을 견디는 정도와 생육·번식 특성**이 다르다. 이 차이에 맞추어 식재할 위치와 시기, 번식·식재방법을 정해야 하므로 생태적 특성의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경(KDS 34 70 10 : 2024) 4.10(6)
4. 설계

4.10 하천조경 배식 설계

(6) 하천조경에서 심고자 하는 식물은 각각의 생태적 특성을 파악하여 식재방법, 식재장소 및 식재시기를 선택한다.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PQQGKL_aY77pzmceKeCYoWxxE_2DvEmH.webp

NoteBase

②

하천수목은 관목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엽수의 잎은 물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침엽수보다 활엽수를 심는다**.

자연친화적 하천조경(KDS 34 70 10 : 2024) 4.10(3)
4. 설계

4.10 하천조경 배식 설계

(3) 하천수목을 심을 때는 관목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침엽수의 잎은 물속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활엽수를 심는다.

③

어린 수목을 심은 초기에는 수목만으로 지표면을 충분히 덮기 어렵다. **키가 작은 다년생 초본류가 지표 피복을 보완하고 뿌리로 토양을 붙잡아** 초기 침식을 줄이므로 파종이나 식재를 병행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경(KDS 34 70 10 : 2024) 4.10(4)
4. 설계

4.10 하천조경 배식 설계

(4) 어린 수목을 심을 경우에는 시공 초기의 지표면 침식방지를 위하여 키가 작은 다년생 초본류를 파종하거나 심는 것을 병행한다.

④

교목 식재 시에는 **수리계산으로 치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히 전도에 대비하여 물의 흐름이나 바람에 의한 외력과 수목의 내력을 비교해 식재 여부를 결정한다.

자연친화적 하천조경(KDS 34 70 10 : 2024) 4.10(5)
4. 설계

4.10 하천조경 배식 설계

(5) 교목을 심을 때에는 수리계산을 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수목의 전도에 대비하여 물의 흐름이나 바람에 의한 외력(전도모멘트)과 수목의 내력(전도한계모멘트)을 비교하여 식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리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NoteBase

문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② 「주택법」에 의한 10만제곱미터의 대지조성사업계획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5만제곱미터의 택지개발계획
④ 「도시개발법」에 의한 1만제곱미터의 개발계획

정답 3번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천 세대 이상**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다른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SaUKflZJYY9xsZul0WdpXJqK37wD9jjV.web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10.6.29, 2021.3.9>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 · 제3호 ·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②

대지조성사업계획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므로, 10만 제곱미터인 계획도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Oit4im6q5_AdczTiI7dPmPmW-tkiSN-.webp

NoteBase

③

택지개발계획의 대상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5만 제곱미터는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가목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BZ02vBXeKnJ4-EHM5Uc56U4QA29qSVbH.webp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므로, 1만 제곱미터인 계획도 대상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4m-pPViBcLg0nFhQ5A64QsF6ov9Ya9O9.webp

NoteBase

문 19. 도시숲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어린 후계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부식생에 빛이 차단되어야 한다.

② 한 공간 내의 식생밀도가 높으면 전염성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도시숲의 대표적인 덩굴잡초에는 환삼덩굴이 있다.

④ 물리적 병해충 방제 방법에는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이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환삼덩굴은 도시숲에서 관리해야 하는 덩굴잡초이다.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가 잎과 가지를 덮으면서 빛을 가려 생육을 방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후계목은 앞으로 기존 나무를 대신하여 숲을 구성할 어린 나무이다. 어린 나무도 광합성을 해야 하므로 하부식생에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종의 특성에 맞는 빛이 도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상층의 가지와 잎이 지나치게 빽빽하면 솎아베기 등으로 빛 조건을 개선한다.

② X: 식생밀도가 높다고 전염성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밀한 식생은 통풍을 나쁘게 하고 습도를 높여 일부 병원균의 발생과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적정 밀도를 유지하여 통풍을 확보**하고 병해충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③ O: 환삼덩굴은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도시숲에서 생육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덩굴잡초에 해당한다. 주변 식물을 타고 올라가 덮으면서 빛을 가리고 광합성을 방해하므로 유지관리 과정에서 제거할 대상이 된다.

④ X: 살충제나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은 약제의 작용으로 병해충을 억제하는 **화학적 방제**이다. 물리적 방제는 열이나 빛 등의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열처리나 유아등을 이용한 해충 포획 등이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②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성한다.

③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은 좁게 설치한다.

정답 4번

①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고 도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②

생태통로 내부는 아교목·관목·초목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갖추도록 조성**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 성한다.

③

작은 동물이 쉽게 이동하도록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며,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NoteBase

④

생태통로는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선지는 길이와 폭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NoteBase